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26
----------	-------

발의연월일 : 2023. 5. 11.

발의자 : 홍석준 · 김정재 · 박성중  
김용판 · 최춘식 · 박덕흠  
구자근 · 김영식 · 백종현  
박대수 · 이현승 · 정경희  
윤창현 · 김상훈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지역 경제·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함.

그런데 정보통신산업 진흥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는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2항 신설 등).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계획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